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815
----------	-------

발의연월일 : 2026. 5. 6.

발 의 자 : 김미애 · 유용원 · 송언석
김정재 · 김상훈 · 김기현
김재섭 · 김선교 · 서지영
김위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로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5배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의성이 인정되는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특정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추가적 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악의적인 부정경쟁행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현행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부정경쟁행위로 확대하여 현행 제도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악의적인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6항).

법률 제 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6항 중 “제2조제1호차목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① ~ ⑤ (생 략)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원은 <u>제2조제1호차목의 행위</u>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⑥ ----- <u>부정경쟁행위</u> ----- ----- ----- ----- ----- -----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